

상속재산 분할 협의서

년 월 일,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 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.

1. 건물의 표시

2. 토지의 표시

위 상속재산은 의 소유로 한다.

위 협의는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,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, 기타 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.

20 년 월 일

공동상속인 : (인)
주 소 :
공동상속인 : (인)
주 소 :
공동상속인 : (인)
주 소 :
공동상속인 : (인)
주 소 :